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59호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2호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5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31
○ 인천광역시조례 제64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37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	4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4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0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7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3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8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철도, 광장, 공원) 결정(변경) 정정 고시 ..	8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5호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8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6호 도시관리계획(굴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7호 도시관리계획(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8호 도시관리계획(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2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04

회 람								
--------	--	--	--	--	--	--	--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693호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차 제안공고 10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04호 공청회 개최 공고 10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17호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 1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18호 2020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연장 공고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119
- 인천부평소방서공고 제2020-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규) 공고 12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21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12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4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3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6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7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9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5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163

기 타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0-81호 인천별빛초등학교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공고 173
- 인천별빛초등학교공고 제2020-2호 관인등록 공고 174
- 인천별빛초등학교공고 제2020-3호 관인등록 공고 175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1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제2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 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8월 20일에 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회의의 개최) ①·② (생략) <신설></p>	<p>제17조(회의의 개최)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 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p>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p> <p>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 제척 조항 등 개정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제17조의2)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완(제20조)
-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적용(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2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2호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생략)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 -----며, 한차례만 ----- -----.</p> <p>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② <u>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p> <p><u>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③ <u>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4. <u>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연임 제한(제3조제4항)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제3조의2)
- 위원의 해임·해촉 조항 신설(제3조의3)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

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회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 대상 (제4조): 외국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구성 (제6조 ~ 제10조)
- 사후관리 및 지원 (제12조)
- 국제교류 협력의 취소 (제13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추진 취소 시 의회 의결 거침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자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

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교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 수호 의지 제고

2. 주요내용

- 교육감 책무 (제2조)
- 독도교육 강화 사업추진 (제5조)
 - 현장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토론·학술대회, 교원 연수 등
- 협력체계 구축 (제7조)
 - 교육부,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등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5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학생 대상 체계적인 노동교육 근거 마련으로 학생 권리의식 및 노동인권 관련 문제해결 능력 배양

2. 주요내용

- 교육감 책무(제4조)
- 노동인권교육(제8조)
 -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위탁 및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제11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6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

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 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규정 마련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도모

2. 주요내용

- 세부 안전기준 (제5조)
- 안전점검 등 (제6조)
 - 학교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교육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학교홈페이지 공개
- 안전교육 (제9조)
 - 교육감 안전교육 교재 학교 제공, 실습위주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7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4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교육재난 발생 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

2. 주요내용

- 교육감 책무(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5조)
 -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제6조): 현금, 현물 등 지원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36호, 2020.6.29.)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월 공동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 032-440-463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구역명: 구월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구월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 생략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36호(2020.06.2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구월 A-3BL) 고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내용과 같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박태환수영장)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 명칭: 문학종합운동장(문학박태환수영장) 편익시설 설치사업

3. 면적 및 규모

- 면적 및 규모
 - 면적: 432,034.6㎡(운동장)중 10,620.8㎡(박태환수영장)
 - 규모: 연면적 18,193.56㎡ 중 28.04㎡(1층 용도변경)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9,118.1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9,090.08㎡	-28.04㎡
			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8.04㎡	+28.04㎡
	문화 및 집회시설 (매점)	66.40㎡	문화 및 집회시설 (매점)	66.40㎡	변경 없음
	업무시설 (사무소)	597.91㎡	업무시설 (사무소)	597.91㎡	변경 없음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3,556.10㎡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3,556.10㎡	변경 없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95.79㎡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95.79㎡	변경 없음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2,050.00㎡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2,050.00㎡	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20. 7.~ 2020. 12.

5. 사업시행자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성 명: 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인천 소방학교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	증) 29,964	29,964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A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29,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교육 훈련시설 설치 의무화 법적 준수 및 기존 교육훈련장 협소에 따른 소방학교 이전 필요 • 소방교육훈련 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예 소방관 양성과 시민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0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3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

Ⅲ.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	2,376,437	2006.05.0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376,43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45,367	48.2	
	제1종일반주거지역	34,554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441	7.9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456	34.7	
	준주거지역	98,916	4.2	
상업 지역	소 계	111,153	4.7	
	일반상업지역	111,153	4.7	
녹지 지역	소 계	1,119,917	47.1	
	자연녹지지역	1,119,917	47.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변경)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46	15,991	326,445	22	8,616	151,210	17	5,425	128,712	7	1,950	46,523
변경	합계	49	16,292	329,504	24	8,896	154,184	17	5,425	128,712	8	1,971	46,608
기정	광로	1	360	15,759	-	-	-	-	-	-	1	360	15,759
기정	대로	3	2,993	90,341	-	-	-	1	1,949	63,989	2	1,044	26,352
기정	중로	28	10,254	196,096	8	6,232	126,961	16	3,476	64,723	4	546	4,412
기정	소로	14	2,384	24,249	14	2,384	24,249	-	-	-	-	-	-
변경	소로	17	2,685	27,308	16	2,664	27,223	-	-	-	1	21	8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8	40	보조간선	485 (360)	광3-14	대2-75	일반도로	-	인고 제2002-31호	
기정	대로	2	75	30	보조간선	2,830 (1,949)	대2-44	대2-1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대로	3	98	25	보조간선	529	대2-75	중1-302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대로	3	99	25	보조간선	515	대2-75	중1-302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294	20 (15)	집산도로	486.5 (470)	광3-28	소1-9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9	23	보조간선	362	중1-310	대2-75	일반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1	310	22	보조간선	129	대3-99	완6	일반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287	광3-34	소1-20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3	20	보조간선	1,770 (1,468)	중1-304	대3-75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4	20	보조간선	557	대2-75	중1-302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5	20	보조간선	731 (543)	중2-434	대2-75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6	20	보조간선	416	대3-98	중1-304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27	15	집산도로	979	중1-303	중2-430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28	15	집산도로	139	중1-303	중2-427	일반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29	15	집산로	259	중1-303	중2-427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0	15	집산로	341	중1-302	중1-303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1	15	집산로	121	중1-303	근4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2	15	집산로	106	중1-303	근1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3	15	집산로	107	중1-305	근1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4	15	집산로	599	대2-75	중1-305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5	15	집산로	48	중3-232	중2-434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48	15	집산로	240	문화시설1	대3-75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49	15	집산로	85	광3-28	중2-434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3	15	특수로	42	광3-28	중2-435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4	15	집산로	72	중2-457	소1-12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55	15	집산로	238	중2-449	중2-434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6	15	집산로	55	중2-455	소1-12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로	45	중2-455	중2-454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3	227	12	집산로	19	대2-75	쓰레기 집하장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3	232	12	집산로	210	중2-435	중2-449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3	236	12	집산로	191	중1-310	중1-310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3	237	12	집산로	126	중1-310	대3-99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로	303	중2-432	중2-432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로	292	중2-432	중2-432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3	10	특수로	236	대2-75	중1-303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로	117	중1-303	근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로	168	소1-7	소1-7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로	36	소1-5	소1-7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7	10	국지로	299	소1-5	중1-303	일반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8	10	특수로	361	대2-75	중1-305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9	10	특수로	335	중1-305	중2-43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로	92	중2-434	중2-456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로	55	중2-456	중2-45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로	18	중1-303	소1-5	일반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로	42	광3-28	중3-232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30	중2-232	중2-434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신설	소로	1	21	10	국지도로	36	중1-303	소1-2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2	10	국지도로	244	중2-431	소1-2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4	특수도로	21	소1-22	소(특)1-4	보행자	-	-	

주1) ()의 연장(m)길이는 구역 내 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1-21	○ 도로신설 - 폭원 : 10m - 연장 : 36m	-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1-22	○ 도로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44m	-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21m	-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보행자전용도로인 소로1-4호선과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주1	주차장	논현동 773-3	1,44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2	주차장	논현동 754-4	4,28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3	주차장	논현동 754-3	3,718.5	인고 제2019-125호	광장1과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기정	주4	주차장	논현동 750-2	2,58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5	주차장	논현동 749-3	5,16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6	주차장	논현동 744-5	1,30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7	주차장	논현동 742-1	3,159	인고 제2006-133호	
신설	주8	주차장	논현동 767-1	1,031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주8	노외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논현동 767-1 - 면적 : 1,031㎡	-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변지역 주차수요 수용을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고잔공원	고잔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983	141,092	'66.08.31	
기정	근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38-8	561,641	인고 제2006-67호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기정	근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6-5	34,71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근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5-7	10,63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근4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63-2	216,49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1	제1호 소공원	소공원	논현동 751-6	6,446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어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65-4	1,51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7-2	1,92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3	제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73-4	1,51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74-4	1,59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5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5-5	1,689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6	제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9-5	3,2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7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0-3	1,5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8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39-5	8,511	인고 제2006-133호	

(2) 녹지 (변경 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논현동 762-2	3,08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연2	녹지	연결녹지	논현동 767-5	3,50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60-8	2,65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9-9	2,50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3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73-5	2,24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4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74-5	3,73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5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5-8	3,45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6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0-3	3,461	인고 제2006-133호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완7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9-2	58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8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9-4	8,44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9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5-6	6,27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0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0-5	5,91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1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6-6	5,00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2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39-6	2,47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3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7-3	4,47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4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1-5	78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5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1-4	1,027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6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7-2	429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7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5	29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8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8	45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9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7-3	424	인고 제2009-253호	

(2) 광장 (변경 없음)

○ 광장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광1	광장	일반광장	논현동 754-3	3,718.5	인고 제2006-133호	주3과 중복결정 (지상광장)
기정	광2	광장	교통광장	논현동 750-1	8,010	인고 제2006-133호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1) 공동구 (변경 없음)

○ 공동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공동구1	공동구	대2-75	대2-75	근린공원2	0.895	7,16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동구2	공동구	광3-28	대3-98	어린이공원6	0.260	2,595	인고 제2006-133호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교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유1	-	유치원	논현동 766-3	1,04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유2	-	유치원	논현동 744-3	1,09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유3	-	유치원	논현동 738-3	1,98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초1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67-3	10,19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초2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74-2	10,147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초3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55-2	10,484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초4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38-5	10,99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1	학교	중학교	논현동 765-2	11,46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2	학교	중학교	논현동 755-3	11,20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1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62-1	12,85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2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67-2	15,39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3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38-4	12,712	인고 제2006-133호	

(2) 공공청사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공1	공공청사	논현동 766-2	1,90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2	공공청사	논현동 773-2	96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3	공공청사	논현동 744-4	1,73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4	공공청사	논현동 739-2	68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5	공공청사	논현동 739-3	1,109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7	공공청사	논현동 756-3	505	인고 제2008-331호	

(3) 문화시설 (변경 없음)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1	도서관	논현동 739-4	1,933	인고 제2010-225호	
기정	문1	문화시설	논현동 738-1	8,4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문2	문화시설	논현동 767-4	10,905	인고 제2006-133호	

(4)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사1	사회복지시설	논현동 738-8	1,777	인고 제2013-30호	제1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마) 보건위생시설 (변경)

(1) 종합의료시설 (변경)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의1	종합의료시설	논현동 767-1	-	인고 제2006-133호 2006.08.07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의1	종합 의료시설	○ 폐지 - 위치 : 논현동 767-1 - 면적 : 14.721㎡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복지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미개발된 종합의료시설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소래·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하수도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오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논현동 756-2	1,165	인고 제2006-133호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쓰1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장	논현동 738-7	1,603	인고 제2006-133호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위 치		
R1	4,841	-1	논현동 761-9	341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61-10	347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61-11	348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61-12	348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61-13	348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61-14	348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61-1	342	분할, 합병 불허	
		-8	논현동 761-8	342	분할, 합병 불허	
		-9	논현동 761-7	347	분할, 합병 불허	
		-10	논현동 761-6	347	분할, 합병 불허	
		-11	논현동 761-5	347	분할, 합병 불허	
		-12	논현동 761-4	347	분할, 합병 불허	
		-13	논현동 761-3	347	분할, 합병 불허	
		-14	논현동 761-2	342	분할, 합병 불허	
R2	2,878	-1	논현동 760-7	413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60-6	412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60-5	413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60-4	413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60-3	412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60-2	412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60-1	403	분할, 합병 불허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R3	4,627	-1	논현동 758-9	343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58-10	333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58-11	333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58-12	328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58-13	327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58-14	327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58-1	320	분할, 합병 불허	
		-8	논현동 758-8	343	분할, 합병 불허	
		-9	논현동 758-7	334	분할, 합병 불허	
		-10	논현동 758-6	334	분할, 합병 불허	
		-11	논현동 758-5	328	분할, 합병 불허	
		-12	논현동 758-4	328	분할, 합병 불허	
		-13	논현동 758-3	328	분할, 합병 불허	
		-14	논현동 758-2	321	분할, 합병 불허	
R4	2,779	-1	논현동 759-8	342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59-7	348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59-6	348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59-5	349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59-4	348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59-3	348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59-2	348	분할, 합병 불허	
		-8	논현동 759-1	348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	15,125	-	

나) 연립주택용지 (변경 없음)

○ 연립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A2		20,991	-	논현동 739-1	20,991	분할, 합병 불허
A8		39,408	-	논현동 765-1	39,408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60,399	-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A1		34,965	-	논현동 740-1	34,965	분할, 합병 불허
A3		80,312	-	논현동 740-2	80,312	분할, 합병 불허
A4		38,919	-	논현동 749-2	38,919	분할, 합병 불허
A5		67,127	-	논현동 755-1	67,127	분할, 합병 불허
A6		55,725	-	논현동 756-1	55,725	분할, 합병 불허
A7		49,143	-	논현동 757-1	49,143	분할, 합병 불허
A9		76,922	-	논현동 766-1	76,922	분할, 합병 불허
A10		52,270	-	논현동 773-1	52,270	분할, 합병 불허
A11		101,464	-	논현동 774-1	101,464	분할, 합병 불허
A12		82,493	-	논현동 755-4	82,493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639,340	-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결정(변경)계획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RC1	8,750	-1	논현동 764-1	2,352	-	2,352	RC1-2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64-2	2,240	-	2,240	RC1-1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4-3	4,158	-	4,158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기정	RC2	1,327	-1	논현동 768-1	216	-	216	RC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68-2	222	-	222	RC2-1, RC2-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8-3	222	-	222	RC2-2, RC2-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68-4	222	-	222	RC2-3, RC2-5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68-5	222	-	222	RC2-4, RC2-6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68-6	223	-	223	RC2-5와 공동개발권장	
기정	RC3	1,093	-1	논현동 769-5	211	-	211	RC3-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69-4	223	-	223	RC3-1, RC3-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9-3	225	-	225	RC3-2, RC3-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69-2	223	-	223	RC3-3, RC3-5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69-1	211	-	211	RC3-4와 공동개발 권장	
기정	RC4	2,229	-1	논현동 770-7	219	-	219	RC4-2, RC4-6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0-8	225	-	225	RC4-1, RC4-3, RC4-7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0-9	225	-	225	RC4-2, RC4-4, RC4-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0-10	226	-	226	RC4-3, RC4-5, 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0-1	219	-	219	RC4-4, RC4-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0-6	219	-	219	RC4-1, RC4-7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0-5	226	-	226	RC4-2, RC4-6, RC4-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0-4	226	-	226	RC4-3, RC4-7, 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9	논현동 770-3	225	-	225	RC4-4, RC4-8, RC4-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0	논현동 770-2	219	-	219	RC4-5, 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RC5	3,445	-1	논현동 771-9	242	-	242	RC5-2, RC5-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1-10	248	-	248	RC5-1, RC5-3, RC5-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1-11	248	-	248	RC5-2, RC5-4, RC5-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1-12	248	-	248	RC5-3, RC5-5, RC-11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1-13	248	-	248	RC5-4, RC5-6, RC-12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1-14	248	-	248	RC5-5, RC5-7, RC-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1-1	241	-	241	RC5-6, RC5-1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1-8	241	-	241	RC5-1, RC5-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9	논현동 771-7	248	-	248	RC5-2, RC5-8, RC5-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0	논현동 771-6	248	-	248	RC5-3, RC5-9, RC5-11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1	논현동 771-5	248	-	248	RC5-4, RC5-10, RC5-12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2	논현동 771-4	248	-	248	RC5-5, RC5-11, RC5-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3	논현동 771-3	248	-	248	RC5-6, RC5-12, RC5-1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4	논현동 771-2	241	-	241	RC5-7, RC5-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기정	RC6	1,797	-1	논현동 754-1	819	-	819	RC6-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4-2	978	-	978	RC6-1와 공동개발권장	
기정	RC7	3,849	-1	논현동 753-1	997	-	997	RC7-2, RC7-3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3-4	962	-	962	RC7-1, RC7-4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53-2	927	-	927	RC7-1, RC7-4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53-3	963	-	963	RC7-2, RC7-3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기정	RC8	2,595	-1	논현동 752-1	864	-	864	RC8-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2-2	883	-	883	RC8-1, RC8-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52-3	848	-	848	RC8-2와 공동개발권장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RC11	2,990	-1	논현동 744-1	979	-	979	RC11-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4-2	1,006	-	1,006	RC11-1, RC1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4-3	1,005	-	1,005	RC11-2와 공동개발권장	
기정	RC12	4,845	-1	논현동 743-1	2,013	-	2,013	RC1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3-2	2,832	-	2,832	RC12-1과 공동개발권장	
기정	RC13	3,879	-1	논현동 741-1	1,909	-	1,909	RC13-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1-2	1,970	-	1,970	RC13-1와 공동개발권장	
기정	RC14	1,878	-1	논현동 772-8	224	-	224	RC14-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2-7	237	-	237	RC14-1, RC14-3 중 1개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2-6	236	-	236	RC14-2, RC14-4 중 1개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2-5	236	-	236	RC14-3, RC14-5 중 1개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2-4	236	-	236	RC14-4, RC14-6 중 1개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2-3	236	-	236	RC14-5, RC14-7 중 1개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2-2	236	-	236	RC14-6, RC14-8 중 1개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2-1	237	-	237	RC14-7과 공동개발권장	
신설	RC15	3,552	-1	논현동 767-1	-	증)1,324	1,324	-	
			-2	논현동 767-1	-	증)1,057	1,057	-	
			-3	논현동 767-1	-	증)1,171	1,171	-	
신설	RC16	1,695	-1	논현동 767-1	-	증)770	770	-	
			-2	논현동 767-1	-	증)453	453	-	
			-3	논현동 767-1	-	증)472	472	-	
신설	RC17	3,312	-1	논현동 767-1	-	증)677	677	-	
			-2	논현동 767-1	-	증)459	459	-	
			-3	논현동 767-1	-	증)435	435	-	
			-4	논현동 767-1	-	증)436	436	-	
			-5	논현동 767-1	-	증)436	436	-	
			-6	논현동 767-1	-	증)437	437	-	
			-7	논현동 767-1	-	증)432	432	-	

구분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m ²)	획지		면적(m ²)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RC18	2,072	-1	논현동 767-1	-	증)259	259	-	
			-2	논현동 767-1	-	증)259	259	-	
			-3	논현동 767-1	-	증)259	259	-	
			-4	논현동 767-1	-	증)259	259	-	
			-5	논현동 767-1	-	증)259	259	-	
			-6	논현동 767-1	-	증)259	259	-	
			-7	논현동 767-1	-	증)259	259	-	
			-8	논현동 767-1	-	증)259	259	-	
총계			-		38,677	증)10,631	49,308		

마)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 일반상업용지 결정계획

가구번호	도면번호	면적(m ²)	획지		면적(m ²)	비고
			번호	위치		
C1		7,955	-	논현동 747-1	7,95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C2		4,235	-1	논현동 746-4	1,417	C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6-5	1,400	C2-1, C2-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6-6	1,418	C2-2와 공동개발권장
C3		4,140	-1	논현동 746-1	1,380	C3-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6-2	1,380	C3-1, C3-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6-3	1,380	C3-2와 공동개발권장
C8		6,840	-1	논현동 751-2	3,473	C8-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1-3	3,367	C8-1와 공동개발권장
C10		18,940	-	논현동 751-1	18,94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총계			-		42,110	-

바) 공공시설용지 (변경)

○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계획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면적(㎡)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1 ~ 공5, 공7	6,907	공1	논현동 766-2	1,907	-	1,90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2	논현동 773-2	967	-	96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3	논현동 744-4	1,735	-	1,73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4	논현동 739-2	684	-	6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5	논현동 739-3	1,109	-	1,10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7	논현동 756-3	505	-	5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변경	주1 ~ 주8	22,680.5	주1	논현동 773-3	1,444	-
주2	논현동 754-4	4,280				-	4,2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3	논현동 754-3	3,718.5				-	3,718.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광1과 중복결정)	
주4	논현동 750-2	2,581				-	2,58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5	논현동 749-3	5,162				-	5,16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6	논현동 744-5	1,305				-	1,3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7	논현동 742-1	3,159				-	3,15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8	논현동 767-1	-				중) 1,031	1,0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초1 ~ 고3	105,443	초1	논현동 767-3	10,197	-	10,19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2	논현동 774-2	10,147	-	10,14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3	논현동 755-2	10,484	-	10,4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4	논현동 738-5	10,990	-	10,99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중1	논현동 765-2	11,461	-	11,46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중2	논현동 755-3	11,201	-	11,20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1	논현동 762-1	12,857	-	12,85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2	논현동 767-2	15,394	-	15,39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3	논현동 738-4	12,712	-	12,7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유1 ~ 유3	4,126	유1	논현동 766-3	1,045	-	1,04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2	논현동 774-3	1,098	-	1,09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3	논현동 738-3	1,983	-	1,98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문1 ~ 문2	19,336	문1	논현동 738-1	8,431	-	8,4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문2	논현동 767-4	10,905	-	10,9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광1 ~ 광2	11,728.5	광1	논현동 754-3	3,719	-	3,718.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3과 중복결정)	
			광2	논현동 750-1	8,010	-	8,01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도1	1,933	도1	논현동 739-4	1,933	-	1,93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연1 ~ 연2	6,584	연1	논현동 762-2	3,080	-	3,0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연2	논현동 767-5	3,504	-	3,50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면적(m ²)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완1 ~ 완19	54,632	완1	논현동 760-8	2,653	-	2,65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2	논현동 759-9	2,502	-	2,50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3	논현동 773-5	2,245	-	2,24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4	논현동 774-5	3,734	-	3,73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5	논현동 755-8	3,458	-	3,45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6	논현동 750-3	3,461	-	3,46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7	논현동 749-2	584	-	5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8	논현동 749-4	8,447	-	8,44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9	논현동 755-6	6,278	-	6,27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0	논현동 740-5	5,912	-	5,9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1	논현동 756-6	5,005	-	5,0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2	논현동 739-6	2,471	-	2,47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3	논현동 757-3	4,473	-	4,47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4	논현동 751-5	783	-	78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5	논현동 751-4	1,027	-	1,02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6	논현동 747-2	429	-	42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7	논현동 745	293	-	29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8	논현동 748	453	-	45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9	논현동 747-3	424	-	42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근1 ~ 근4	825,145	근1	논현동 738-8	561,641	-	561,64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2	논현동 756-5	34,712	-	34,7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3	논현동 755-7	10,633	-	10,63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4	논현동 763-2	216,492	-	216,49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고잔공원	141,092	고잔공원	고잔동 983	141,092	-	141,09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소1	6,446	소1	논현동 751-6	6,446	-	6,446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어1 ~ 어8	21,506	어1	논현동 765-4	1,517	-	1,51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2	논현동 757-2	1,923	-	1,92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3	논현동 773-4	1,513	-	1,51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4	논현동 774-4	1,591	-	1,59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5	논현동 755-5	1,689	-	1,68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6	논현동 749-5	3,231	-	3,2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7	논현동 740-3	1,531	-	1,5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8	논현동 739-5	8,511	-	8,51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폐지	의1	14,721	의1	논현동 767-1	14,721	감) 14,721	-	근린생활시설용지(RC15-RC18)로 용도 변경	
기정	오1	1,165	오1	논현동 756-2	1,165	-	1,16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쓰1	1,603	쓰1	논현동 738-7	1,603	-	1,60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기정	사1	1,777	사1	논현동 738-8	1,777	-	1,777	제1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기타시설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종1 ~ 종3	4,738		종1	논현동 765-3	1,62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종2	논현동 738-6	1,9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종3	논현동 738-2	1,116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보지		10,777	유보지	논현동 764-4	10,777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R1 ~ R4	R1 ~ R4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단, 지하층 주거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0m				

나) 연립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2, A8	A2, A8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 ※ 단, 지하층 주거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형 태	○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을 처리한 평지붕(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A3 A4 A5 A6 A7 A9 A10 A11 A12	A1 A3 A4 A5 A6 A7 A9 A10 A11 A1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A4 : 180%이하)		
		높 이	-		
		배 치	○ 탑상형배치 (권장) (결정도 참조)		
		형 태	○ 경사지붕 또는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한 평지붕 (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0m		

라) 근린생활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RC1 ~ RC8, RC11 ~ RC14	RC1 ~ RC8, RC11 ~ RC14	용 도	지정 용도	○ RC2~5,RC14 : 주거용도 건축물(최고층 1개층에 한함)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권장 용도	○ 학원 (단,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RC11에 한함		
			불허 용도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창고시설, 공장, 숙박시설, 주거용도 건축물 (단 RC1, RC6-8, RC11-13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RC2~5, RC14 :2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 3층 이상 (RC2~5, RC14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0m					
신설 RC15 ~ RC18	RC15 ~ RC18	용 도	지정 용도	○ RC15-3 : 병원 (최소 1개층 이상)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불허 용도	○ 법률 및 조례의 용도지역에 정하는 불허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단, RC16-2~3, RC17~RC1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주택은 최고층 1개 층에 한하여 1세대/가구 당 전용면적 60㎡이상인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 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RC15, RC16-1 : 350% 이하		
				○ RC16-2,-3, RC17~RC18: 200% 이하		
			높 이	○ RC15, RC16-1 : 7층 이하		
				○ RC16-2,-3, RC17~RC18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0m					

주)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RC15~RC18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마)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 ~ C3, C8, C10	C1 ~ C3, C8, C10	용 도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 격리병원,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주거용도 건축물 (단, C2, C3, C8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 5층 이상		
		배 치	-		
		형 태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0m				

바) 공공시설용지 (변경)

○ 공공청사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1 ~ 공5 공7	공1 ~ 공5 공7	용 도	지정 용도	○ 공1 : 공공청사 ○ 공2 : 우체국 ○ 공3 : 동청사 ○ 공4 : 파출소 ○ 공5 : 소방서 ○ 공7 : 공동구관리사무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공1, 공2 : 250% / 공3 : 350% / 공4, 공5, 공7 : 2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단, 공공청사 7용지 건축한계선 : 1.5m				

○ 도서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1	도1	용 도	지정 용도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주1 주2 주3 주6	주1 주2 주3 주6	용 도	지정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4 주5 주7	주4 주5 주7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주8	주8	용 도	지정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 단,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0m					

○ 학교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 ~ 고3	초1 ~ 고3	용 도	허용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 문화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문1 ~ 문2	문1 ~ 문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유치원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1 ~ 유3	유1 ~ 유3	용 도	허용 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유3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오1	오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쓰레기자동집하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쓰1	쓰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의료시설 (폐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폐지	의1	의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계획설명서 참조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0m					

○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1	사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종교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종1 ~ 종3	종1 ~ 종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과 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납골당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계획설명서 참조		
		색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유보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종1 ~ 종3	종1 ~ 종3	용도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1 ~ R4	R1 ~ R4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구조 및 배치	○ 모든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 원칙으로 하고 기계식 주차방식을 금지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나) 연립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 A12	A1 ~ A12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구간도 준수하여야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연립주택용지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바닥포장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공동주택용지 중 60㎡이상인 블록은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차량을 제외한 95%이상을 지하주차장(데크주차장 포함)으로 계획을 하여야함 ○ 공동주택용지 중 60㎡미만인 블록은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차량을 제외한 7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여야함	
		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지내 보행자 통로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그 위치에 단지내 보행자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전면공지	○ 연립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내 보행자 전용도로변이 접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 부분 중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고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RC1 ~ RC8, RC11 ~ RC14	RC1 ~ RC8, RC11 ~ RC14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함	
			차량 출입구	○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폭이 넓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함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게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게 조성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신설	RC15 ~ RC18	RC15 ~ RC18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함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폭이 넓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함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게 인접 보도의 높이와 일치되게 조성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라)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 ~ C3, C8, C10	C1 ~ C3, C8, C10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함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폭이 넓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함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 이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계식 주차설치를 억제 ○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함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게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게 조성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않음	
		기 타	○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필지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야함	

마) 공공시설용지 (변경)

○ 학교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쓰레기자동집하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 ~ 고3, 오1, 쓰1	초1 ~ 고3, 오1, 쓰1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 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준수	

○ 공공청사, 유치원, 문화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1 ~ 공5, 공7, 도1, 유1 ~ 유3, 문1, 문2,	공1 ~ 공5, 공7, 도1, 유1 ~ 유3, 문1, 문2,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 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준수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으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함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됨 ○ 포장의 재료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 의료시설 (폐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폐지	의1	의1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준수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으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함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됨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 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 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 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주1~주7	주1~주7	주차장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신설	주8	주8			

바)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종교시설, 유보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종1 ~ 종3, 유보지	종1 ~ 종3, 유보지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함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으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함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됨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사) 용적률 인센티브(단, 근린생활시설용지(RC15~RC18 제외), 상업용지에 한함) (변경)

구 분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20%	총연면적 20%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조성시	용적률× (추가조성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구조 : α = 1.0 지상형구조 : α = 2.0 침상형구조 : α = 3.0 단, 의무면적 이외 추가조성시
환경 친화적	투수성 바닥처리	투수성재료로 조성시	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중수도	중수도시스템 설치시	20%	빗물이용시설 제외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	용적률× (조성면적÷옥상면적)×0.2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	용적률× (조성면적÷전체벽면면적)×0.5	

- 주)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는 인천시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넘을 수 없음(준주거 : 500%, 일반상업 : 1,000%)
 2.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RC15-RC18은 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20.6.26)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경예산을 고시합니다.

2020. 7. 7.

인천광역시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억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19,994	100.00%	116,175	100.00%	3,819	3.29%
일반회계	87,084	72.57%	84,029	72.33%	3,055	3.64%
특별회계	32,909	27.43%	32,146	27.67%	764	2.38%
공기업특별	12,773	10.64%	12,541	10.80%	232	1.85%
상수도사업	4,261	3.55%	4,150	3.57%	111	2.68%
하수도사업	2,279	1.90%	2,215	1.91%	64	2.89%
경제자유구역사업	6,233	5.19%	6,176	5.32%	57	0.92%
기타특별	20,136	16.78%	19,604	16.87%	532	2.7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5	0.17%	198	0.17%	7	3.67%
소방특별회계	2,957	2.46%	2,883	2.48%	74	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79	5.15%	6,179	5.32%	0	0.0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3,139	2.62%	2,896	2.49%	243	8.39%
수질개선특별회계	61	0.05%	61	0.05%	0	0.53%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6	0.01%	15	0.01%	1	6.89%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08	0.09%	29	0.02%	79	271.2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4	0.17%	111	0.10%	93	83.3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82	0.15%	68	0.06%	113	166.7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1	0.48%	550	0.47%	21	3.8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40	0.53%	640	0.55%	△0	△0.0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299	2.75%	3,431	2.95%	△132	△3.86%
도시개발특별회계	160	0.13%	63	0.05%	96	151.52%
기반시설특별회계	24	0.02%	24	0.02%	0	0.15%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74	0.15%	167	0.14%	7	4.0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219	1.85%	2,289	1.97%	△70	△3.07%

2.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

(단위 : 억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9,994	100.00 %	116,175	100.00 %	3,819	3.29%
지방세수입	38,571	32.14 %	38,571	33.20 %	0	0.00%
세외수입	15,505	12.92 %	16,988	14.62 %	△1,483	△8.73%
지방교부세	7,777	6.48 %	7,589	6.53 %	188	2.47%
보조금	35,952	29.96 %	34,543	29.73 %	1,409	4.08%
지방채	2,681	2.23 %	2,500	2.15 %	181	7.2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507	16.26 %	15,984	13.76 %	3,523	22.04%

나. 세출

(단위 : 억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19,994	100.00 %	116,175	100.00 %	3,819	3.29 %
일반공공행정	11,068	9.22 %	11,048	9.51 %	20	0.18 %
공공질서및안전	4,142	3.45 %	4,078	3.51 %	64	1.57 %
교육	8,167	6.81 %	8,139	7.01 %	28	0.34 %
문화및관광	4,537	3.78 %	4,413	3.80 %	124	2.80 %
환경	11,373	9.48 %	11,058	9.52 %	315	2.85 %
사회복지	41,650	34.71 %	40,357	34.74 %	1,293	3.20 %
보건	679	0.57 %	681	0.59 %	△2	△0.27 %
농림해양수산	1,786	1.49 %	1,797	1.55 %	△11	△0.6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44	3.29 %	2,579	2.22 %	1,365	52.95 %
교통및물류	14,406	12.01 %	14,120	12.15 %	286	2.02 %
국토및지역개발	10,971	9.14 %	10,558	9.09 %	414	3.92 %
과학기술	321	0.27 %	314	0.27 %	7	2.37 %
예비비	110	0.09 %	257	0.22 %	△147	△57.29 %
기타	6,839	5.70 %	6,776	5.83 %	63	0.92 %

3.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가. 세입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7,084	100.00 %	84,029	100.00 %	3,055	3.64%
지방세수입	38,571	44.29 %	38,571	45.90 %	0	0.00%
세외수입	5,726	6.57 %	5,459	6.50 %	267	4.89%
지방교부세	7,428	8.53 %	7,396	8.80 %	32	0.43%
보조금	28,728	32.99 %	27,403	32.61 %	1,325	4.83%
지방채	2,006	2.30 %	1,600	1.90 %	406	25.3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625	5.31 %	3,600	4.28 %	1,026	28.49%

나. 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7,084	100.00 %	84,029	100.00 %	3,055	3.64 %
일반공공행정	10,907	12.53 %	10,907	12.98 %	1	0.01 %
공공질서및안전	3,398	3.90 %	3,365	4.00 %	33	0.97 %
교육	7,921	9.10 %	7,901	9.40 %	20	0.25 %
문화및관광	4,280	4.91 %	4,155	4.94 %	125	3.01 %
환경	3,469	3.98 %	3,416	4.07 %	53	1.55 %
사회복지	35,456	40.71 %	34,163	40.66 %	1,293	3.79 %
보건	678	0.78 %	680	0.81 %	△2	△0.27 %
농림해양수산	1,786	2.05 %	1,797	2.14 %	△11	△0.6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825	4.39 %	2,479	2.95 %	1,345	54.26 %
교통및물류	8,795	10.10 %	8,526	10.15 %	269	3.15 %
국토및지역개발	2,468	2.83 %	2,407	2.86 %	61	2.55 %
과학기술	321	0.37 %	314	0.37 %	7	2.37 %
예비비	110	0.13 %	257	0.31 %	△147	△57.29 %
기타	3,669	4.21 %	3,662	4.36 %	7	0.19 %

4.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가. 세입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2,909	100.00 %	32,146	100.00 %	764	2.3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세외수입	9,780	29.72 %	11,529	35.87 %	△1,750	△15.17%
지방교부세	349	1.06 %	193	0.60 %	156	80.89%
보조금	7,224	21.95 %	7,139	22.21 %	85	1.18%
지방채	675	2.05 %	900	2.80 %	△225	△25.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881	45.22 %	12,384	38.52 %	2,498	20.17%

나. 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2,909	100.00 %	32,146	100.00 %	764	2.38 %
일반공공행정	161	0.49 %	142	0.44 %	19	13.29 %
공공질서및안전	744	2.26 %	713	2.22 %	31	4.42 %
교육	246	0.75 %	238	0.74 %	8	3.32 %
문화및관광	257	0.78 %	259	0.80 %	△1	△0.48 %
환경	7,904	24.02 %	7,642	23.77 %	262	3.43 %
사회복지	6,194	18.82 %	6,194	19.27 %	0	0.00 %
보건	1	0.00 %	1	0.00 %	0	0.00 %
농림해양수산	0	0	0	0	0	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9	0.36 %	99	0.31 %	20	20.17 %
교통및물류	5,611	17.05 %	5,594	17.40 %	17	0.30 %
국토및지역개발	8,503	25.84 %	8,151	25.36 %	352	4.32 %
과학기술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기타	3,169	9.63 %	3,114	9.69 %	56	1.78 %

※ 천원단위로 편성한 예산을 억 원 단위로 조정함에 따라 끝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3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6항,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440-4818), 중구청(건축과, ☎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1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 칭: (주)라인올물류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99㎡(건축 연면적)
- 규 모: 건폐율 1.52%, 용적률 0.6%, 높이 7.3m이하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라인을물류 대표이사 정용택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91-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중구 향동7가	101	잡종지	33,356.7	33,356.7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인천향만공사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붙임**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항만법」 등 관련 법규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공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철도, 광장, 공원)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 6. 1.)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철도, 광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잘못 표기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4),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당초]

라.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8	인천교 공원	근린공원	동구 송림동 318 일원, 서구 가좌동 606-3 일원	140,890	-	140,890	건고 1986-427호 (86.09.29)	•중복결정 - 광2-25호선(6,379㎡)
변경	2	근린공원	근린공원	가정동 537-19 일원	13,081	-	13,081	인고 2016-215호 (16.09.19)	•중복결정 - 광2-25호선(1,434㎡) - 30호 교통광장(2,167㎡)
변경	3	근린공원	근린공원	가정동 549 일원	39,177	-	39,177	인고 2016-215호 (16.09.19)	•중복결정 - 광2-25호선(1,711㎡) - 30호 교통광장(3,076㎡)

[정정]

라.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8	인천교 공원	근린공원	동구 송림동 318 일원, 서구 가좌동 606-3 일원	140,890	-	140,890	건고 1986-427호 (86.09.29)	•중복결정 - 광2-25호선(6,379㎡)
변경	1	근린공원	근린공원	가정동 537-19 일원	10,805	-	10,805	인고 2016-215호 (16.09.19)	•중로2-905호선 (황단보도교)중복결정 - 면적 210㎡
변경	2	근린공원	근린공원	가정동 549 일원	36,770	-	36,770	인고 2016-215호 (16.09.19)	•중로2-905호선 (황단보도교)중복결정 - 면적 64㎡

※ 정정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 6. 1.)로 고시한 내용 중 '공원 결정(변경) 조서'의 근린공원 도면표시번호 오기 정정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8호(2020. 6. 29.) 조서 내용 반영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5호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제4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대)			적용기간
	면허대수	택시 총량 (적정대수)	과잉규모	
인천광역시	14,153	12,437	1,716 (면허대비 12%)	2020년 ~ 2024년
강화군	197	134	63 (면허대비 32%)	
옹진군	19	20	- 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6호

도시관리계획 (굴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굴포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굴포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공원녹지과(032-509-868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근린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73-1번지 일원
3. 면 적: 20,529.1㎡
4. 도시계획시설(굴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골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73-1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20,529.1	6,958.0	-	-	-	36	20,529.1	6,705.2	1동	504.0	504.0	38			
공 원 시 설	시 설 계	6,958.0	6,958.0	-	-	-	36	6,705.2	6,705.2	1동	504.0	504.0	38	감 2528㎡ 증 2기	
	기 반 시 설	소계	5,552.0	5,552.0	-	-	-	5,177.2	5,177.2	-	-	-	-	-	감 3748㎡
		도로	4,441.0	4,441.0	-	-	-	3,013.2	3,013.2	-	-	-	-	-	감 1,427.8㎡
		광장	1,111.0	1,111.0	-	-	-	2,164.0	2,164.0	-	-	-	-	-	증 1,053.0㎡
	조경시설	72.0	72.0	-	-	-	2	-	-	-	-	-	-	감 72.0㎡ 감 2기	
	휴양시설	-	-	-	-	-	34	472.0	472.0	-	-	-	25	증 472.0㎡ 감 9기	
	유희시설	60.0	60.0	-	-	-	-	-	-	-	-	-	-	감 60.0㎡	
	운동시설	1,274.0	1,274.0	-	-	-	-	1,056.0	1,056.0	1동	504.0	504.0	13	감 218.0㎡ 증 13기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	-	-	
	녹지 / 기타	13,571.1	-	-	-	-	-	13,823.9	-	-	-	-	-	-	증 252.8㎡
	시설율(% (법정 40% 이하)	• 시설율 : 33.9% 녹지율 : 66.10% • 건폐율 : 0.00%						• 시설율 : 32.66% 녹지율 : 67.34% • 건폐율 : 2.46%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명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시설명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 닥 면 적	연 면 적									바 닥 면 적			연 면 적	
계				20,529.1	6,958.0	-	-	-	-	36	계			20,529.1	6,705.2	-	1동	504.0	504.0	38	감)252.8㎡ 증)2기	
도 로 및 광 장	소 계			5,552.0	5,552.0	-	-	-	-	-	소 계			5,177.2	5,177.2	-	-	-	-	-	감)374.8㎡	
	도로	-	-	4,441.0	4,441.0	-	-	-	-	-	도로	-	전지역	3,013.2	3,013.2	-	-	-	-	-	감)1,427.8㎡	
	광장	1	-	1,111.0	1,111.0	-	-	-	-	-	광장	가	갈산. 373-1.공	2,164.0	2,164.0	-	-	-	-	-	증)1,053.0㎡	
	광장1	1-1	-	(350.0)	(350.0)	-	-	-	-	-	광장1	가-1	"	(56.0)	(56.0)	-	-	-	-	-	(감)294.0㎡	
	광장2	1-2	-	(220.0)	(220.0)	-	-	-	-	-	광장2	가-2	"	(500.0)	(500.0)	-	-	-	-	-	(증)280.0㎡	
	광장3	1-3	-	(43.0)	(43.0)	-	-	-	-	-	광장3	가-3	"	(56.0)	(56.0)	-	-	-	-	-	(증)13.0㎡	
	광장4	1-4	-	(152.0)	(152.0)	-	-	-	-	-	-	-	-	-	-	-	-	-	-	-	(감)152.0㎡	
	광장5	1-5	-	(35.0)	(35.0)	-	-	-	-	-	-	-	-	-	-	-	-	-	-	-	(감)35.0㎡	
	광장6	1-6	-	(161.0)	(161.0)	-	-	-	-	-	-	-	-	-	-	-	-	-	-	-	(감)161.0㎡	
	광장7	1-7	-	(150.0)	(150.0)	-	-	-	-	-	광장4	가-4	"	(372.0)	(372.0)	-	-	-	-	-	(증)222.0㎡	
	-	-	-	-	-	-	-	-	-	-	광장5	가-5	"	(75.0)	(75.0)	-	-	-	-	-	(증)75.0㎡	
	-	-	-	-	-	-	-	-	-	-	광장6	가-6	"	(1,105.0)	(1,105.0)	-	-	-	-	-	(증)1,105.0㎡	
조 경 사 설	소 계			72.0	72.0	-	-	-	-	2	소 계			-	-	-	-	-	-	-	감)72.0㎡ 감)2기	
	파고라1	3	-	36.0	36.0	-	-	-	-	1	-	-	-	-	-	-	-	-	-	-	감)36.0㎡ 감)1기	
	파고라2	3	-	36.0	36.0	-	-	-	-	1	-	-	-	-	-	-	-	-	-	-	감)36.0㎡ 감)1기	
휴 양 사 설	소 계			-	-	-	-	-	-	34	소 계			472.0	472.0	-	-	-	-	-	25	증)472.0㎡ 감)9기
	-	-	-	-	-	-	-	-	-	-	휴게소	나	갈산. 373-1.공	472.0	472.0	-	-	-	-	-	-	(증)472.0㎡
	-	-	-	-	-	-	-	-	-	-	휴게소-1	나-1	"	(57.0)	(57.0)	-	-	-	-	-	-	(증)57.0㎡
	-	-	-	-	-	-	-	-	-	-	휴게소-2	나-2	"	(28.0)	(28.0)	-	-	-	-	-	-	(증)28.0㎡
	-	-	-	-	-	-	-	-	-	-	휴게소-3	나-3	"	(55.0)	(55.0)	-	-	-	-	-	-	(증)55.0㎡
	-	-	-	-	-	-	-	-	-	-	휴게소-4	나-4	"	(63.0)	(63.0)	-	-	-	-	-	-	(증)63.0㎡
	-	-	-	-	-	-	-	-	-	-	휴게소-5	나-5	"	(50.0)	(50.0)	-	-	-	-	-	-	(증)50.0㎡
	-	-	-	-	-	-	-	-	-	-	휴게소-6	나-6	"	(57.0)	(57.0)	-	-	-	-	-	-	(증)57.0㎡
	-	-	-	-	-	-	-	-	-	-	휴게소-7	나-7	"	(31.0)	(31.0)	-	-	-	-	-	-	(증)31.0㎡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공작물(기)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공작물(기)			
								바다면적	연면적									바다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	-	-	-	-	-	-	-	-	-	휴게소-8	나-8	“	(25.0)	(25.0)	-	-	-	-	-	(증)25.0m ²		
	-	-	-	-	-	-	-	-	-	-	휴게소-9	나-9	“	(106.0)	(106.0)	-	-	-	-	-	(증)106.0m ²		
	-	-	-	-	-	-	-	-	-	-	파파	①	“	-	-	-	-	-	-	-	9	증)9기	
	등의자	2	-	-	-	-	-	-	-	22	등의자	②	“	-	-	-	-	-	-	-	-	16	감)6기
	평의자	4	-	-	-	-	-	-	-	12	-	-	-	-	-	-	-	-	-	-	-	-	감)12기
유희 시설	소 계			60.0	60.0	-	-	-	-	-	소 계			-	-	-	-	-	-	-	-	-	감) 60.0m ²
	놀이터	5	-	60.0	60.0	-	-	-	-	-	-	-	-	-	-	-	-	-	-	-	-	-	감)60.0m ²
운동 시설	소 계			1,274.0	1,274.0	-	-	-	-	-	소 계			1,056.0	1,056.0	-	1	504.0	504.0	13	감) 218.0m ² 증) 13기		
	-	-	-	-	-	-	-	-	-	-	다목적 운동공간	다	갈산 373-1.공	552.0	552.0	-	-	-	-	-	-	감)94.0m ²	
	다목적 운동장1	6	-	646.0	646.0	-	-	-	-	-	다목적 운동공간1	다-1	“	(463.0)	(463.0)	-	-	-	-	-	-	감)183.0m ²	
	-	-	-	-	-	-	-	-	-	-	다목적 운동공간2	다-2	“	(41.0)	(41.0)	-	-	-	-	-	-	증)41.0m ²	
	-	-	-	-	-	-	-	-	-	-	다목적 운동공간3	다-3	“	(48.0)	(48.0)	-	-	-	-	-	-	증)48.0m ²	
	다목적 운동장2	6	-	628.0	628.0	-	-	-	-	-	다목적 살폐운동장	1	“	504.0	504.0	-	1동	504.0	504.0	-	감)124.0m ²		
	-	-	-	-	-	-	-	-	-	-	채취년기구	③	“	-	-	-	-	-	-	-	13	증)13기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			13,571.1	-	-	-	-	-	-	소 계			13,823.9	-	-	-	-	-	-	-	-	증) 252.8m ²
	녹지	-	-	13,571.1	-	-	-	-	-	-	녹지	-	전지역	13,823.9	-	-	-	-	-	-	-	-	증) 252.8m ²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1,572.0	4,441.0				감)1,427.8㎡
변경	총계				1,549.4	3,013.2				
소계					29.0	140.0				증)140.0㎡
신설	소로	3	1	5.0	24.0	120.0	진입로	부지경계	1다목적실내운동장	
신설	소로	3	2	4.0	5.0	20.0	진입로	부지경계	가-4.광장 4	
소계					1,520.4	2,873.2				감)1,567.8㎡
기정	산책로	-	1	3	13.3	4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2	감)40.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2	2.5	148.0	370.0	산책로	1-2. 광장	1-1. 광장	증)45.2㎡
변경	산책로	-	1	2.4	173.0	415.2	연결로	가-2.광장2	가-1.광장 1	
기정	산책로	-	3	2.6	7.7	20.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2	증)18.4㎡
변경	산책로	-	2	2.4	16.0	38.4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기정	산책로	-	4	4.0	170.0	680.0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감)680.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5	1.0	45.0	45.0	산책로	산책로 6	1-4. 광장	감)45.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6	2.5	56.0	140.0	산책로	1-3. 광장	1-4. 광장	감)140.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7	3.0	5.0	15.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8	감)15.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8	2.5	208.0	520.0	산책로	부지경계	1-4. 광장	증)280.0㎡
변경	산책로	-	3	2.5	320.0	800.0	연결로	가-3.광장3	가-6.광장 6	
기정	산책로	-	9	2.5	16.0	4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8	감)10.0㎡
변경	산책로	-	4	2.5	12.0	30.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3	
기정	산책로	-	10	1.2	150.0	180.0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8	감)180.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11	4.0	205.0	820.0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감)488.8㎡
변경	산책로	-	5	1.2	276.0	331.2	진입로	부지경계	가-6.광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산책로	-	12	2.5	228.0	570.0	산책로	1-5. 광장	1-7. 광장	감)27.0㎡
변경	산책로	-	6	2.5	217.2	543.0	연결로	가-5.광장5	가-4.광장4	
기정	산책로	-	13	2.5	12.0	3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2	증)15.0㎡
변경	산책로	-	7	2.5	18.0	45.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6	
기정	산책로	-	14	1.5	35.3	53.0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2	감)53.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15	2.5	15.2	38.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2	증)25.0㎡
변경	산책로	-	8	2.5	25.2	63.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6	
기정	산책로	-	16	1.0	50.0	50.0	산책로	1-7. 광장	1-6. 광장	감)50.0㎡
폐지	-	-	-	-	-	-	-	-	-	
기정	산책로	-	17	4.0	207.5	830.0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감)602.0㎡
변경	산책로	-	9	1.2	190.0	228.0	연결로	가-5.광장5	소로3-2	
신설	산책로	-	10	1.0	5.0	5.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11	증)5.0㎡
신설	산책로	-	11	1.2	52.0	62.4	연결로	가-2.광장2	산책로 12	증)62.4㎡
신설	산책로	-	12	2.0	20.5	41.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증)41.0㎡
신설	산책로	-	13	1.2	60.0	72.0	연결로	산책로 12	산책로 2	증)72.0㎡
신설	산책로	-	14	1.2	40.0	48.0	연결로	산책로 2	산책로 15	증)48.0㎡
신설	산책로	-	15	2.0	27.0	54.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증)54.0㎡
신설	산책로	-	16	1.2	30.0	36.0	연결로	산책로 15	가-1.광장1	증)36.0㎡
신설	산책로	-	17	1.5	16.0	24.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증)24.0㎡
신설	산책로	-	18	1.5	10.0	15.0	연결로	산책로 5	산책로 3	증)15.0㎡
신설	산책로	-	19	4.0	2.5	10.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5	증)10.0㎡
신설	산책로	-	20	1.2	10.0	12.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9	증)12.0㎡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7호

도시관리계획 (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032-880-4499)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48번지 일원
3. 면 적: 1,980㎡
4. 도시계획시설(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푸르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48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3,100.0	1,787.0	-	-	-	79	1,980.0	864.1	-	-	-	54	감1,120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787.0	1,787.0	-	-	-	79	864.1	864.1	-	-	-	54	감922.9
	기 반 시 설	소계	1,142.8	1,142.8	-	-	-	494.3	494.3	-	-	-	-	
		도로	754.6	754.6	-	-	-	167.3	167.3	-	-	-	-	
		광장	388.2	388.2	-	-	-	327.0	327.0	-	-	-	-	
	조경시설	59.0	59.0	-	-	-	13	20.0	20.0	-	-	-	11	
	휴양시설	152.9	152.9	-	-	-	14	32.0	32.0	-	-	-	8	
	유희시설	301.5	301.5	-	-	-	6	267.2	267.2	-	-	-	6	
	교양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124.0	124.0	-	-	-	7	50.6	50.6	-	-	-	3	
	편익시설	6.8	6.8	-	-	-	2	-	-	-	-	-	-	
관리시설	-	-	-	-	-	37	-	-	-	-	-	26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	-		
녹지 / 기타	1,313.0	-	-	-	-	-	1,115.9	-	-	-	-	-	감197.1	
시설율(% (법정 60% 이하))	시설율 : 57.6% • 녹지율 : 42.4%						시설율 : 43.7% • 녹지율 : 56.3%							
	• 건폐율 : -%						• 건폐율 :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100.0	1,787.0	-	-	-	79		1,980.0	864.1	-	-	-	54	감1,120
기 반 시 설	계		1,142.8	1,142.8	-	-	-	-		494.3	494.3	-	-	-	-	감648.5
	도로		754.6	754.6	-	-	-	-		167.3	167.3	-	-	-	-	
	광장	가	388.2	388.2	-	-	-	-	가-1	191.1	191.1	-	-	-	-	
	광장		-	-	-	-	-	-	가-2	86.8	86.8	-	-	-	-	
	광장		-	-	-	-	-	-	가-3	13.1	13.1	-	-	-	-	
	광장		-	-	-	-	-	-	가-4	36.0	36.0	-	-	-	-	
조 경 시 설	계		59.0	59.0	-	-	-	13		20.0	20.0	-	-	-	11	감39.0
	파고라	①	34.4	34.4	-	-	-	2	①	-	-	-	-	-	2	
	계비온월	②	6.8	6.8	-	-	-	6		-	-	-	-	-	-	
	플랜터	③	15.9	15.9	-	-	-	3		-	-	-	-	-	-	
	조형플랜터	④	1.9	1.9	-	-	-	1		-	-	-	-	-	-	
	자연석쌓기	⑤	-	-	-	-	-	1		-	-	-	-	-	-	
	조형앞음벽		-	-	-	-	-	-	②	13.0	13.0	-	-	-	4	
	앞음벽		-	-	-	-	-	-	③	4.6	4.6	-	-	-	1	
	수목보호대		-	-	-	-	-	-	④	2.4	2.4	-	-	-	1	
	계단		-	-	-	-	-	-	⑤	-	-	-	-	-	1	
	조경석쌓기		-	-	-	-	-	-	⑥	-	-	-	-	-	1	
디딤석		-	-	-	-	-	-	⑦	-	-	-	-	-	1		
휴 양 시 설	계		152.9	152.9	-	-	-	14		32.0	32.0	-	-	-	8	감120.9
	휴게마당	나	152.9	152.9	-	-	-	-	나	32.0	32.0	-	-	-	-	
	평의자	⑥	-	-	-	-	-	6	⑧	-	-	-	-	-	6	
	등의자	⑦	-	-	-	-	-	8	⑨	-	-	-	-	-	2	
유 회 시 설	계		301.5	301.5	-	-	-	6		267.2	267.2	-	-	-	6	감34.3
	어린이놀이터	다	301.5	301.5	-	-	-	-	다-1	176.4	176.4	-	-	-	-	
	어린이놀이터	다	301.5	301.5	-	-	-	-	다-2	90.8	90.8	-	-	-	-	
	조함놀이대	⑧	-	-	-	-	-	1	⑩	-	-	-	-	-	1	
	미끄럼틀		-	-	-	-	-	-	⑪	-	-	-	-	-	1	
	암벽오르기		-	-	-	-	-	-	⑫	-	-	-	-	-	1	
	그네	⑨	-	-	-	-	-	1	⑬	-	-	-	-	-	1	
	회전무대	⑩	-	-	-	-	-	1		-	-	-	-	-	-	
흔들놀이	⑪	-	-	-	-	-	3	⑭	-	-	-	-	-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계		124.0	124.0	-	-	-	7		50.6	50.6	-	-	-	3	감73.4
	체력단련장	라	124.0	124.0	-	-	-	-	라	50.6	50.6	-	-	-	-	
	체력단련시설1	㉓	-	-	-	-	-	2	㉔	-	-	-	-	-	1	
	체력단련시설2	㉕	-	-	-	-	-	4	㉖	-	-	-	-	-	1	
	체력단련시설3	㉗	-	-	-	-	-	1	㉘	-	-	-	-	-	1	
편익시설	계		6.8	6.8	-	-	-	2		-	-	-	-	-	-	감6.8
	음수대	㉙	1	1	-	-	-	1		-	-	-	-	-	-	
	자전거보관대	㉚	5.8	5.8	-	-	-	1		-	-	-	-	-	-	
관리시설	계		-	-	-	-	-	37		-	-	-	-	-	26	
	안내판	㉛	-	-	-	-	-	2	㉜	-	-	-	-	-	1	
	보안등	㉝	-	-	-	-	-	21	㉞	-	-	-	-	-	10	
	녹지등	㉟	-	-	-	-	-	14	㊱	-	-	-	-	-	12	
	CCTV		-	-	-	-	-	-	㊲	-	-	-	-	-	3	
시설녹지맞기타			1,313.0	1,313.0	녹지율 : 42.4%				1,115.9	1,115.9	녹지율 : 56.3%				감197.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29.1	754.6				
변경					75.5	167.3				
당초	소로	3	1	3.0	24.8	74.4	진입로	진입부	체력단련장	
변경	소로	3	1	2.0	14.8	29.6	진입로	광장3	광장2	
당초	소로	3	2	3.2	26.6	85.1	진입로	진입부	체력단련장	
변경	소로	3	2	2.5	30.8	77.9	진입로	광장2	광장1	
당초	소로	3	3	4.5	84.7	381.2	진입로	광장	광장	
변경	소로	3	3	2.0	29.9	59.8	진입로	광장2	광장1	
당초	소로	3	4	2.3	51.3	118.0	산책로	진입부	휴게마당	
변경										
당초	소로	3	5	2.3	41.7	95.9	산책로	진입부	휴게마당	
변경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8호

도시관리계획 (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032-880-4499)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8-17번지 일원
3. 면 적: 1,773㎡
4. 도시계획시설(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꽃구름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8-17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소공원)						변 경 후 (어린이공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계	653.0	127.4	-	-	-	23	1,773.0	957.3	-	-	-	53	증1,120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27.4	127.4	-	-	-	23	957.3	957.3	-	-	-	53	증829.9	
	기 반 시 설	소계	109.2	109.2	-	-	-	-	435.1	435.1	-	-	-	-	
		도로	85.2	85.2	-	-	-	-	334.9	334.9	-	-	-	-	
		광장	24.0	24.0	-	-	-	-	100.2	100.2	-	-	-	-	
	조경시설	1.8	1.8	-	-	-	2	11.3	11.3	-	-	-	7		
	휴양시설	9.8	9.8	-	-	-	4	90.4	90.4	-	-	-	8		
	유희시설	-	-	-	-	-	-	285.4	285.4	-	-	-	6		
	교양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6.6	6.6	-	-	-	2	135.1	135.1	-	-	-	7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15	-	-	-	-	-	25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	-		
녹지 / 기타	525.6	-	-	-	-	-	815.7	-	-	-	-	-	증290.1		
시설율(% (변경전 법정 20% 이하) (변경후 법정 60% 이하)	시설율 : 19.5% • 녹지율 : 80.5%						시설율 : 54.0% • 녹지율 : 46.0%								
	• 건폐율 : -%						• 건폐율 :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물	축 물	공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부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물	축 물	공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	
합 계			653.0	127.4	-	-	-	23		1,773.0	957.3	-	-	-	53	증1,120
기 반 시 설	계		109.2	109.2	-	-	-	-		435.1	435.1	-	-	-	-	증325.9
	도로		85.2	85.2	-	-	-	-		334.9	334.9	-	-	-	-	
	광장	가	24.0	24.0	-	-	-	-	가-1	90.0	90.0	-	-	-	-	
	광장		-	-	-	-	-	-	가-2	10.2	10.2	-	-	-	-	
조 경 시 설	계		1.8	1.8	-	-	-	2		11.3	-	-	-	-	7	증9.5
	조경시설	나	1.8	1.8	-	-	-	-		-	-	-	-	-	-	
	파고라	①	-	-	-	-	-	1	①	-	-	-	-	-	2	
	조경석쌓기		-	-	-	-	-	-	②	-	-	-	-	-	1	
	디딤석	②	-	-	-	-	-	1	③	-	-	-	-	-	1	
앉음벽		-	-	-	-	-	-	④	11.3	-	-	-	-	3		
휴 양 시 설	계		9.8	9.8	-	-	-	4		90.4	-	-	-	-	8	증80.6
	휴게마당	다	9.8	9.8	-	-	-	-	나-1	65.4	-	-	-	-	-	
	휴게마당		-	-	-	-	-	-	나-2	25.0	-	-	-	-	-	
	평의자	③	-	-	-	-	-	2	⑤	-	-	-	-	-	6	
	등의자	④	-	-	-	-	-	2	⑥	-	-	-	-	-	2	
유 회 시 설	계		-	-	-	-	-	-		285.4	-	-	-	-	6	증285.4
	어린이놀이터		-	-	-	-	-	-	다	285.4	-	-	-	-	-	
	놀이마운딩		-	-	-	-	-	-	⑦	-	-	-	-	-	2	
	튜브통과하기		-	-	-	-	-	-	⑧	-	-	-	-	-	1	
	미끄럼틀		-	-	-	-	-	-	⑨	-	-	-	-	-	1	
	오르기놀이대		-	-	-	-	-	-	⑩	-	-	-	-	-	1	
	암벽오르기홀더		-	-	-	-	-	-	⑪	-	-	-	-	-	1	
운 동 시 설	계		6.6	6.6	-	-	-	2	라	135.1	-	-	-	-	7	증128.5
	체력단련장	라	6.6	6.6	-	-	-	-		135.1	-	-	-	-	-	
	체력단련시설	⑤	-	-	-	-	-	2		-	-	-	-	-	-	
	체력단련시설1		-	-	-	-	-	-	⑫	-	-	-	-	-	1	
	체력단련시설2		-	-	-	-	-	-	⑬	-	-	-	-	-	1	
	체력단련시설3		-	-	-	-	-	-	⑭	-	-	-	-	-	1	
	체력단련시설4		-	-	-	-	-	-	⑮	-	-	-	-	-	1	
	체력단련시설5		-	-	-	-	-	-	⑯	-	-	-	-	-	1	
	체력단련시설6		-	-	-	-	-	-	⑰	-	-	-	-	-	1	
체력단련시설7		-	-	-	-	-	-	⑱	-	-	-	-	-	1		
관 리 시 설	계		-	-	-	-	-	15		-	-	-	-	-	25	
	안내판	⑥	-	-	-	-	-	1	⑲	-	-	-	-	-	1	
	보안등	⑦	-	-	-	-	-	7	⑳	-	-	-	-	-	8	
	녹지등	⑧	-	-	-	-	-	7	㉑	-	-	-	-	-	13	
	CCTV		-	-	-	-	-	-	㉒	-	-	-	-	-	3	
시설녹지맞기타			525.6		녹지율 : 80.5%					815.7		녹지율 : 46.0%				증290.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58.3	85.2				
변경					129.3	352.7				
당초	소로	3	1	1.5	22.4	33.6	진입로	진입부	휴게시설	
변경	소로	3	1	4.0	58.9	223.1	진입로	진입부	진입부	
당초	소로	3	2	1.5	28.3	42.5	진입로	진입부	휴게시설	
변경	소로	3	2	2.0	10.1	20.8	진입로	광장2	소로3-1	
당초	소로	3	3	1.2	7.6	9.1	진입로	진입부	휴게시설	
변경	소로	3	3	2.0	44.7	91.0	산책로	소로3-1	소로3-1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2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9호(2019.1.16.)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번지(청라A4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2차)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 7.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 청라A4블록 공동주택(외국인 임대)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변경)
 - 변경전: (주)시티건설 대표이사 김태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390-11]
 - 변경후: (주)시티건설 대표이사 김태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없음)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번지(청라 A4블록)
 - 나. 대지면적: 20,041.8㎡
 - 다. 연면적: 45,015.3267㎡
 - 라. 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18층 / 6개동 / 270세대
 - 84A형 112세대, 84B형 79세대, 84C형 79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1개동
4. 사업기간(변경 없음)
 - 가. 2019. 06. ~ 2021. 07.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변경 없음)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공 고

인천시광역시공고 제2020-1693호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Q=35,000m³/일)
 - 하수재이용시설(Q=50,000m³/일)
- 운영기간 : 20년
 - 운영범위 : 하수처리시설(기존<70,000m³/일> 및 신설), 하수재이용시설, 차집관로(펌프장포함)
- 추정 총사업비 : 70,934백만원 (2018.09.0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안자 : (가칭)만수바이오텍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18. 09.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8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 (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 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 부문’ 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6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함.
- 배부장소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032-440-3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04호

공청회 개최 공고

—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 신청에 따른 육성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육성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7. 24.(금) 14:00~16:00

나. 장 소 :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1층 세미나실D13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410)

※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https://youtu.be/Ao1SWD6oGQ4>)과 병행 (전자공청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외 참석자는 전자공청회 참석만 가능합니다.)

3. 주요내용

○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안) 등 설명 및 의견수렴

- 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현황
- 특구 육성의 기본 구상 및 비전과 목표 등 기본방향
-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 세부내용 : 인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환경]-[자료실] 게재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 : 발표신청자 및 관련 전문가 중 선정

본 공청회의 토론 등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20. 7. 15.(수) 18:00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서면(FAX, 직접방문, 우편)으로 인천시(녹색기후과)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토론의 편의상 발표 신청자 중 2명만 선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가. 본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자 하는 분은 **2020. 7. 24.(금) 14:00**에 위에 기재된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나. 위 기재된 시간에 참석이 어렵지만 별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 7. 17.(금) 18:00**까지 FAX, 우편 또는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편번호 21554)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 403호 녹색기후과

- 연락처 : ☎ 032-440-4495, FAX 032-440-4486, E-mail : ytpark90@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녹색기후과(☎032-440-4495)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32-54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인천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7. .

제출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17호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 공고기간 : 2020. 7. 10.(금) ~ 2020. 7. 16.(목)

□ 공고내용

가. 참여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규모	추정감정평가금액	발주부서	선정수
1	「학익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평가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321 일원 ○감정평가대상: 공동주택 1,5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종전의 토지, 건축물 및 영업권	6,170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2개업자
2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위치: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82필지, 지장물 108건, 영업권 8건	572억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개업자
3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위치: 부평구 부평동 760-700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105필지, 지장물 107건, 영업권 5건	418억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개업자
4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액 산정	○위치: 미추홀구 주안동 산55-1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 54필지, 지장물	252억원	월미공원사업소	2개업자
5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위치: 동구 송림동 14-36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120필지, 지장물 101건, 영업권 4건	179억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개업자
6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290-1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49필지, 건물 28동, 영업권 50건	150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1개업자
7	「블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위치: 서구 블로2지구 9블럭 2로트 ○감정평가대상: 토지 1필지	130억원	종합건설본부	2개업자
8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위치: 미추홀구 송의동 232-1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 123필지, 건물 55동, 영업권 93건	119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1개업자

- ※ 심사일 기준 토지소유자 등 추천에 따른 해당사업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 시 제외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한국감정원, 예일, 삼창, 나라, 대화, 대한, 세종, 가온, 대일, 삼일, 온누리, 태평양, 에이원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미래세한, 하나, 동인, 삼창, 대일, 중앙, 프라임, 티앤비, 세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TMB, 경일, 태평양, 삼창, 대화, 하나, 세종, 삼일
 -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교, 공감, 대화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삼창, 제일, 대화, 호암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등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법인등(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 ⑤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

다. 신청기간 : 2020. 7. 10.(금) ~ 2020. 7. 16.(목) 16:00

라. 신청방법 : 문서24, 우편(등기), 방문

- ① 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20. 7. 16.(목) 16: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함.
- ②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문서24 적극 이용 협조

마.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시청 내 IDC 1층)

바.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공고일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서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업무실적)

-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신청자 중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 업무실적 보고 확인서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합에서 시행·발주한 사업은 제외

(주의사항)

- 사후 업무지원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서는 세로 서식으로 각 2매 이내로 작성하여 페이지는 기재하지 않음.
- 해당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 이름 포함)을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사. 선정결과 :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심의 후 발주부서 및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개별통지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 사업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정 후 계약 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로 결정

아. 참여 대상사업에 관한 문의처

- 「학익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평가 :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4572)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40-3762)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40-3763)
-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액 산정 :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440-5953)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40-3762)
-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4482)
- 「블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440-5183)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액 산정 : 미추홀구 도시정비과(☎880-4572)

※ 기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감정평가법인등 참여 신청서

 참여 사업 :

 감정평가법인등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법인등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해당사업 기 참여 등 제외 해당 내역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협회: 법인소속확인서)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협회: 경력증명서) ○ 참여 감정평가사의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관내 평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실적 20건 이상에 대한 협회 발행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협회 발행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 보험 등 가입여부(협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주의, 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 평가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세로양식으로 각 2매 이내 작성(도면을 제외한 그림, 도형 등은 사용 금지 및 페이지 수 미기재)		
기타 의견	※ 해당사업에 대한 소유자 추천 등 기 참여 등에 따른 제외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참여 감정평가사 평가실적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관내 평가 실적)

연번	사 업 명	평가대상소재지	발주처	감정서번호	평가사
1					
2					
3					

※ 참여 감정평가사 관내 평가실적은 참여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이 우리시 관내인 평가실적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말하며 참여 평가사별 작성.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은 제외)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718호

2020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한 『2020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기존 공고와 지원조건 및 내용은 동일하며 접수기간만 연장하여 공고 함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 기업 당 최대 3품목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 운동화(X)

2. 지정기준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6. 15.(월) ~ 7.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97, romi7393@korea.kr)

5.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19년)

6. 추진절차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10억원, 금리: 기본 + 0.5% 추가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 미추홀 아이마켓 입점 우선 지원
-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및 인천e몰(모바일 쇼핑몰) 등록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171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지동 ~ 평동 일원

○ 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13	18.5	국지 도로	490	대(주) 2-61	김포시 경계	일반 도로	-	2009. 9.21. (국토부고시 2009-901호)	
변경	대로	3	가	25.5 (25.5~29.5)	보조 간선 도로	490	대(주) 2-61	김포시 경계	일반 도로	-	2009. 9.21. (국토부고시 2009-90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713	대로 3-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확장 - 18.5m → 25.5(25.5~29.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드림로~국도 39호선간 도로 확장공사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3,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4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 계양구 계산새로 88)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인천부평소방서공고 제2020-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규)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신규)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가자소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8 부평오피스텔 206호 (부평동)	김 광 훈 박 민 기 (671-88-01871)	소방시설 관리업	제 인천(부평) -2020-0003 호	2020. 7. 9.

2020 . 7 . 9 .

인천부평소방서장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21호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제2020-31호(2020. 01. 28) 하천(심곡천)공사 시행계획(일부구간)수립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심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연희동 일원(심곡천)

다. 사업규모 : 축제공(좌안 696m, 우안 730m), 호안공(좌안 626m, 우안 612m),
배수구조물(배수통문 1개소, 배수통관4개소), 홍수방어벽, 낙차공, 교량공 등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무상귀속 제외)

구분	소재지
토지 (35필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필지) 443-12, 443-23(분할전 443-7), 437-4, 437-11(분할전 437-2), 436-11(분할전 436-2) 436-4, 436-12(분할전 436-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필지) 126-5, 126-4, 127-6, 127-11, 127-1, 127-12, 127-13, 127-2, 128-2, 128, 128-4, 129-17, 129-54, 129-50, 129-49, 129-53, 129-35 129-57, 129-52, 129-33, 129-55, 129-56, 129-51, 129-34, 129-37, 129-45, 129-40, 129-41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7. 9.(목) ~ 7. 24.(금)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032-440-5168)
-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032-560-4178)

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시기 : 2020. 10월 초 이후 보상협의 예정(추후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의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으로 함)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상금 지급(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신청 후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더 30일 이내에 종합건설본부(토목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서명또는 날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감정 평가업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 신분증 사본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안내를 대신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시기에 공지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032-440-5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기존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기존면적 (㎡)	분할후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서구 연희동	443-12	443-12	제	118	118	118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임**	심곡동 ***				
2	서구 연희동	443-7	443-23	전	545	474	474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3	서구 연희동	437-4	437-4	제	70	70	70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이**	심곡동 **				
4	서구 연희동	437-2	437-11	답	2,136	469	469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이**	심곡동 **				
5	서구 연희동	436-2	436-11	답	1,632	603	603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지**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동 ***호				
6	서구 연희동	436-4	436-4	제	176	176	176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하천구역				지**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동 ***호				
7	서구 연희동	436-3	436-12	답	1,390	11	11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양**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334, ***동***호(연희동, 중앙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교통민 원과), 서인천농협서 곶지점	압류 근저당, 지상권		

연번	소재지	기존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기존면적 (㎡)	분할후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8	서구 심곡동	126-5	126-5	답	127	127	127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417.6	/	380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주안동)				
									3386.4	/	3804	최**					
9	서구 심곡동	126-4	126-4	답	7	7	7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417.6	/	380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주안동)				
									453	/	1585	공**					
									958	/	1585	최**					
10	서구 심곡동	127-6	127-6	답	14	14	1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230.4	/	653	인천광역시	259-4 극동아파트 ***동 ***호				
									422.6	/	653	정**					
11	서구 심곡동	127-11	127-11	답	70	70	7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230.4	/	653	인천광역시	259-4 극동아파트 ***동 ***호				
									422.6	/	653	정**					
12	서구 심곡동	127-1	127-1	답	9	9	9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230.4	/	653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 ***동 ***호(풍무동, 유현마을)				
									422.6	/	653	정**					
13	서구 심곡동	127-12	127-12	답	289	289	289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230.4	/	653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 ***동 ***호(풍무동, 유현마을)				
									422.6	/	653	정**					

연번	소재지	기존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기존면적 (㎡)	분할후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4	서구 심곡동	127-13	127-13	답	460	460	46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정**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 ***동 ***호(풍무동, 유현마을)				
15	서구 심곡동	127-2	127-2	답	4	4	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정**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 ***동 ***호(풍무동, 유현마을)				
16	서구 심곡동	128-2	128-2	제	22	22	22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144	/	1725	인천광역시	미합중국 인디애나주 화이팅시 남링컨가 ****				
									1581	/	1725	박**					
17	서구 심곡동	128	128	답	15	15	15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144	/	1725	인천광역시	미합중국 인디애나주 화이팅시 남링컨가 ****				
									1581	/	1725	박**					
18	서구 심곡동	128-4	128-4	답	266	266	266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144	/	1725	인천광역시	미합중국 인디애나주 화이팅시 남링컨가 ****				
									1581	/	1725	박**					
19	서구 심곡동	129-17	129-17	답	99	99	99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 ***동***호(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20	서구 심곡동	129-54	129-54	답	426	426	426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 ***동***호(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21	서구 심곡동	129-50	129-50	천	26	26	26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서**	인천광역시 서구 윗우물로 **번길 *(석남동)				
22	서구 심곡동	129-49	129-49	전	8	8	8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이**	**				
23	서구 심곡동	129-53	129-53	전	10	10	1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12 (연희동,서인천농협)				

연번	소재지	기존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기존면적 (㎡)	분할후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24	서구 심곡동	129-35	129-35	답	49	49	49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25	서구 심곡동	129-57	129-57	답	386	386	386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26	서구 심곡동	129-52	129-52	전	131	131	13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12 (연희동,서인천농협)				
27	서구 심곡동	129-33	129-33	제	723	723	723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28	서구 심곡동	129-55	129-55	제	178	178	178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29	서구 심곡동	129-56	129-56	유	125	125	125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30	서구 심곡동	129-51	129-51	전	67	67	67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12 (연희동,서인천농협)				
31	서구 심곡동	129-34	129-34	유	3	3	3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32	서구 심곡동	129-37	129-37	유	8	8	8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33	서구 심곡동	129-45	129-45	제	25	25	25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34	서구 심곡동	129-40	129-40	제	40	40	40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35	서구 심곡동	129-41	129-41	제	19	19	19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				국(기획재 정부)					

지 장 물 조 서

□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구 연희동	443-23	벚나무		15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과실수		10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감나무		3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교목		40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갈매나무		10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배나무		5주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서구 연희동	443-23	비닐하우스	13.85x6.01	83㎡	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2	서구 연희동	437-11	비닐하우스	18.01x5.84	105㎡	이**	심곡동 **			
3	서구 연희동	560-5	복숭아나무		8주	국토교통부				
4	서구 연희동	436-4	교목		8주	지**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동 ***호			
5	서구 연희동	434-88	비닐하우스	23.00x5.58	128㎡	국토교통부				
	서구 연희동	434-88	비닐하우스	9.99x5.51	55㎡	국토교통부				
	서구 연희동	434-88	비닐하우스	4.73x7.99	38.0㎡	국토교통부				
	서구 연희동	434-88	이동식화장실		1EA	국토교통부				
6	서구 연희동	433-31	관목		3주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서구 심곡동	126-5	은행나무		2주	최**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 (주안동)			
	서구 심곡동	126-5	벚나무		2주	최**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 (주안동)			
	서구 심곡동	126-5	교목		3주	최**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 (주안동)			
8	서구 심곡동	126-4	이동식화장실		1EA	최** 외 2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번길 ** (주안동)			
9	서구 심곡동	129-17	비닐하우스	14.2x5.86	83㎡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서구 심곡동	129-17	농막	샌드위치패널, 4.64x4.65	22㎡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	서구 심곡동	129-54	펜스		60m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서구 심곡동	129-54	단풍나무		1주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서구 심곡동	129-54	대추나무		1주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서구 심곡동	129-54	교목		5주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서구 심곡동	129-54	무궁화		40㎡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동***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서구 심곡동	129-57	단풍나무		1주	기획 재정부				
12	서구 심곡동	129-55	소나무		5주	기획 재정부				
13	서구 심곡동	129-56	펜스		8m	기획 재정부				
14	서구 심곡동	129-40	참고	컨테이너하우 스,4.0x3.0	12 m ²	기획 재정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4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7.13. ~ 2020.7.27.(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0년 8월 24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0년 8월 24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상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250	정**	경기도 시흥시 큰술공원로3번길 **** (정왕동)	좌 동	2020.5.12. 20:16	중구 향동 인중로	축하중 1.37톤 초과(5축하중 11.37톤)	경기90 자****	500,000	반송 (폐문부재)	
2	000276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서창동, 예은아트빌)	“	2020.5.28. 16:07	서구 청라동 중봉대로	폭 0.25미터 초과(총폭 2.75미터)	전남98 자****	300,000	반송 (폐문부재)	
3	000280	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 (도광미르채)	“	2020.5.30. 08:38	중구 북성동 월미로234번길	폭 0.42미터 초과(총폭 2.92미터)	부산99 사****	500,000	반송 (폐문부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6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117호)의 개정(2019. 7. 17.) 및 시행(2019. 8. 5.)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부서 명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의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
- 나.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서식의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032-440-3044, 팩스 : 032-440-86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7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고유치 공고문

인천광역시 제 호

광 고 공 모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가. 광고접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광고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다. 광고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제출
- 라. 간행물의 명칭 :
 - 간행부수 : · 주요내용: (50자 이내 간략하게) · 주요배부처 :
- 마. 규 격 :
- 바. 광고게재지면 :
- 사. 광고료기준

표지4(뒷표지)	표지2·3, 표지2·3대면	내지

- 아. 광고게재 유의사항
 -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허위·과대광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게재를 제한함
- 자. 구비서류
 - 1) 광고게재신청서 1부(소정양식)
 - 2) 광고 시안 1부
 - 3) 시세, 국세 완납증명 각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해설

- 표지 1 : 겉표지
- 표지 2 : 겉표지의 뒷면
- 표지 2 대면 : 표지 2의 옆면
- 내지 : 표지1·2·3·4· 및 표지2 대면·표지3 대면을 제외한 면
- 표지 4 : 뒷표지
- 표지 3 : 뒷표지의 앞면
- 표지 3대면 : 표지 3의 옆면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광고게재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광고게재 간행물명	
	광고 규격	지면 : 가로×세로(cm)
	광고기간	
	광고내용	
<p>별첨</p>		
<p>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청의 통지에 의거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인천광역시장 귀하</p>		
신청인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p>1. 광고 시안 1부 2. 시세·국세 완납증명 각 1부</p>		<p>사업자등록증</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뒤쪽)

1.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 허위·과대광고 등이 포함된 내용

2. 처리절차

광고유치공모 → 광고 신청(광고신청자)
 (소통기획담당관실)

→ 광고접수 및 내용심의 → 계약 → 광고료 납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통기획담당관실) (신청자)

→ 광고게재
 (발간부서)

[별지 제7호서식]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인천광역시장

발신 :

참 조 소통기획담당관

제 목 간행물판매실적 보고

()월의 시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간행 물명	도서현황		판매 단가	판매현황				재고량
	금 월 입고량	누 계		금월판매량		누 계		
				부 수	판매액	부 수	판매액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인천광역시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

참 조 : 소통기획담당관

제 목 :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

간행물명	판매현황				처리내역				
	기간	출고량	판매량	재고량	계	폐기 처분	무상 보급	참고자 료로 활용	기타
계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7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2020. 4. 14일 일부 개정된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제안 심사절차 및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12조)
 - 제안자 자격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한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 (안 제5조)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다. 제안내용의 실행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안 제14조의2)

-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혁신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 032-440-1653, FAX 032-440-8714, 이메일 kim74111@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2항, 제3조의2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의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u>시민</u>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국민</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제안”이란 <u>시민</u>과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p>
<p>제3조(제안의 제출) ① <u>시민</u>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u>시민</u>·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p>	<p>제3조(제안의 제출) ① <u>국민</u>----- ----- ----- ----- -----.</p> <p>②-----<u>국민</u>----- ----- -----</p>

현 행	개 정 안
<p>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 ----- ----- -----</p>
<p>제3조의2(창안대회) ① ~ ② (생략)</p> <p>③ <u>시민</u>,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3조의2(창안대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민</u>, ----- ----- ----- ----- ----- -----</p>
<p>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0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u></p> <p>5. <u>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u></p> <p>6.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p>
<p>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u>시민</u>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조회 등) ①----- ----- -----<u>국민</u> ----- ----- -----.</p>
<p>② (생략)</p> <p>제12조(제안의 보완·개선)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민</u>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제안의 보완·개선) ----- ----- -----<u>국민과</u> ----- ----- ----- ----- ----- -----.</p>
<p>1.~2. (생략)</p> <p>제14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p>	<p>1.~2.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포상 등) ① ----- ----- ----- ----- -----</p>

현행	개정안
<p>급할 수 있다. <신설></p> <p>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생략)</p> <p>② (생략) <신설></p>	<p>-----.</p> <p>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7조(인사상 특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국민제안규정 ○ 제2조 ○ 제8조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법 ○ 제78조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제안규정 ○ 제2조 ○ 제18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 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

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79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금 통·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 법령	<p>□ 「지방세기본법」</p> <p>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④ (생략)</p> <p>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	--

	<p>□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p>②~⑤ (생략)</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항이 신설되고,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나.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여유 재원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다. 각 특별회계 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함(안 제3조)
-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5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 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12.31.까지로 정함(안 13조)
- 사.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예수한 재원 상환은 새로운 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4층 404호, 전화: 032-440-2553, 팩스: 032-440-8632, 전자우편: bestlife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군·구 청사의 신축 및 대규모 수리와 투자심사 대상 이상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

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2.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전년도 이전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100분의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2. 인천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각 계정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

관리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계정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따른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42조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2조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 타

공 고 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 - 8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20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별빛초등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2020년 7월 6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사용인

인천별빛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별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별빛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별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별빛초등학교 공고 제 2020-2호

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별빛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7.

인천별빛초등학교장

최초 시용 게시일 : 2020. 7. 7.

[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 공고 제 2020-3호

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7.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7. 7.

[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